

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62호
- 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1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」에서 준용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 전부개정으로 시민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동 조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조항 현행화(안 제13조제2항)
- 나. 위원회 조항 재정비(안 제19조 및 제22조)
- 다.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(1) 시민 우수제안 제도

- 서울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‘상상대로 서울’(idea.seoul.go.kr)을 운영하고 있으며, 동 조례에 따라 우수 의견을 제안한 시민에게 소정의 포상을 제공하고 있음.

< 우수제안 선정 현황('24.11.30. 기준) >

| 구 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시민제안 접수건수 | 2,504건 | 2,359건 | 1,604건 | 1,379건 | 1,788건 |
| 우수제안 | 16건 | 11건 | 20건 | 20건 | 20건 |
| 시상금액 | 38만원 | 48만원 | 79만원 | 155만원 | 320만원 |

※ '24년도 포상: 최우수 1명(30만원), 우수 10명(20만원), 장려 9명(10만원) / 모바일 상품권 지급

(2)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」를 준용하지 않고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임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제13조(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) ① (생략) ② 우수제안 및 우수제안자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 중 제안 및 수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같음한다. | 제13조(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|

- 2024년 5월,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가 「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」로 전부개정되면서 일반 시민은 창의행정상(중전의 서울창의상)의 제안 당사자에서 제외되었음.

< 창의행정상(서울창의상) 제안자 범위 >

|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(2023.12.) | 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(2024.5.)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시민 및 서울시·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</u> 하고 공무원의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,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·직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</u> 하고 업무혁신 사례 발굴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
- 이에 서울시는 시민 제안에 대한 내용이 빠진 「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」를 시민 우수제안 제도 운영에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 개정안을 제안한 것임.
- 동 조례가 개정 전의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에서 준용하였던 부분은 심사기준 및 시상등급에 관한 사항이며, 부상의 규모에 관하여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¹⁾ 기존 준용의 의의는 크지 않았다고 판단됨.
- 이에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동 개정안의 입법은 무리가 없다고 보임.

1) 준용 규정은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자치법규 적용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음. (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, 417p) 관련하여 부상에 대해서만 자의적으로 별도 기준을 마련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.

<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(2023.12.) 준용 내용 >

제10조(심사기준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추천 및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창의성
2. 실현가능성
3. 효율성 및 효과성
4. 적용범위
5. 계속성

제12조(시상등급) 서울창의상의 등급은 최우수, 우수, 장려로 구분하여 제3조제1항의 각 부문 별로 시상한다.

- 다만,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서 창의행정상 수여 대상자 중 시민을 삭제한 이유는 홍보기획관의 시민 우수제안 선정 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²⁾인데,

기존 서울창의상의 부상 규모(100만원~300만원)에 비해 시민 우수제안의 부상 규모(10만원~30만원)가 매우 작아 서울창의상 시민부문의 폐지가 시민의 시정 참여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겠음.

- 따라서, 홍보기획관은 시민 우수제안 제도의 부상 규모를 대폭 확대³⁾하는 등 동기부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.

- 한편,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의 홍보기획관이 시정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실행방안까지 모색해야 하는 시민참여 및 시민제안 업무를 소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
| 전문위원 | 임창균(2180-8113) | 입법조사관 | 홍민지(2180-8118)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

2)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(2024.3.), 기획경제위원회

3) 2025년 포상금 예산안: 500만원 (전년도 340만원 대비 160만원 증액)

의안번호
2262

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발 의 | 제 안 자 | 제안일자 | 소관 상임위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서울특별시장 | 2024.12.18. | 문화체육관광위원회 | |
| 주요내용 | <p><개정 필요성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「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」 전부개정으로 '시민부문'이 폐지됨에 따라, 본 조례에서 서울창의상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, 우수 시민제안 시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<p><주요 입법 요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조례 내에 우수 제안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조항을 현행화(안 제13조제2항)하고, 위원회 조항 재정비(안 제19조 및 제22조) | | | | |
| 추진경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□ 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」○ '11. 7. 28. 조례 제정○ '22. 12. 30. 조례 명칭 변경 및 내용 전부개정 | | | | |
| 부 서 검토의견 | 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 | | | | |
| 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쟁점사항 없음※ 관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 개정 | | | | |
| 대응방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함 | | | | |
| 상 임 위 처리결과 | | | | | |
| 향후계획 | | | | | |
| 담당부서 | 콘텐츠담당관 | 팀장 | 오현민(☎2133-6500) | 담당 | 최재혁(☎2133-6532) |